붙임 3 |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요약)』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자격을 갖추고 있는 27,077개 중소기업 가운데 36개 중소기업이 위장 중소기업에 해당**

* 가구업계 (주)엔비스 등 10개 기업은 실태조사 기간중에 법률위반을 해소

1 향후 **5년간 위장 중소기업이 납품할 3,540억원을 차단**하는 효과

○ **(납품금액)** '12년 납품 금액은 708억원이며, 향후 5년간 위장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납품 3,540억원을 사전에 차단

* 조달시장 납품업체 상위(억원) : 쏘피체(191), 세종레미콘(87), 파주레미콘(66), 진성레미콘(33), 보명레미콘(29)

2 **업종별로는 레미콘, 지역에서는 세종 · 대전 · 충남에서 다수 발생**

○ **(업종별)** 위장 중소기업의 83%가 레미콘, 가구·전산업무 등도 해당

* 업종별 위반현황(개) : 레미콘(30), 가구(2), 전산업무(2), 식육가공품(1), LED조명(1)

○ **(지역별)** 대전·세종·충남지역에 12개, 충북 8개, 경기지역 6개 순

3 **위장 중소기업별 지배관계 대기업 중 쌍용레미콘이 7개사로 다수, 지배유형으로는 공장 등의 임차가 86%를 차지**

○ **(지배 대기업)** 쌍용레미콘 7개사, 성신양회 및 유진기업 각 5개사, 동양그룹 5개사, 삼표그룹 계열 4개사 순

○ **(지배유형)** 대기업의 공장 및 건물 임차 32건,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분확보 2건, 대기업 대표가 중소기업 대표 겸임 2건 등

◇ **향후 조치계획 :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36개 중소기업은 명단을 공공기관으로 통보하여 즉각적인 조달시장에서의 퇴출 조치**

Ⅰ.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 개요

□ 조사목적

○ 위장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퇴출 및 진입 차단**을 통해 공공구매 제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

* 조사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32조

□ 조사대상

○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보유한 **27,077개 중소기업**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2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이 부여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확인
- 지방중기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② 중기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 제공할 수 있는 설비 보유
-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자의 생산설비, 생산인력, 생산공정 등을 확인하여 발급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통해 확인

□ 조사기간

○ **(서면· 현장조사) : '13. 4. 15 ~ '13. 5. 20.**

○ **(소명기간 부여 및 법률자문) : '13. 5. 21 ~ '13. 6. 25.**

□ 조사방법

○ 중소기업청 및 중앙회와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서면 실태조사**

- (중기청)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시 제출한 **공장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지배 종속관계 해당 여부를 조사

- (중앙회)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관련 **연합회(11개) 및 조합(82개)**이 회원사 중에서 **의심되는 기업을 조사**

○ **(기타)** 위장 중소기업으로 의심되는 **68개 기업**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II. 조사결과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자격을 갖추고 있는 27,077개 중소기업 가운데 **36개 중소기업이 위장 중소기업에 해당**

◇ 위장 중소기업은 708**억원('12년)을 공공시장에 납품**하여 왔으며 **업종별로는 레미콘, 지역에서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다수 발생

- **향후 5년간** 위장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납품 **3,540억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우회적인 조달시장 진입을 사전 예방 효과**

1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

□ **위장 중소기업 36개** 중 **28개 기업***이 '12년에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한 실적은 708억원****이며, 업체별로는 평균 41억원 납품

* 이순산업 등 8개 기업은 '12년에 조달시장에 진입

**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향후 5년간 납품하게 될 3,540억원 차단효과

○ **10억원~50억원 미만**을 납품한 기업이 15개사로 **전체의 54%**이며, 10억원 미만 납품 기업은 10개사로 36%에 해당

<위장 중소기업별 관급실적('12년)>

위반 중소기업별 관급실적	업체수
100억원이상~	1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	2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15
5억원이상~10억원미만	5
5억원미만	5
총계	28



○ 이 중에서 **가구업계 (주)쏘피체***는 191억원 규모 금액을 납품하여 위장 중소기업 중 **가장 많은 납품실적****을 기록

* 리바트가 대기업이 되면서 조달시장 잔류 목적으로 '11.5월 보유지분 전량을 직원에게 양도, 종업원 지주회사로 분리한 회사(현재 리바트는 조달시장에서 퇴출)

** 이는 '12년도 가구조달시장의 연간 계약기준으로 4위 규모
(1위 팀스 : 1,365억원, 2위 코아스웰 747억원, 3위 우드메탈 722억원)

- 한편 (주)쏘피체는 실태조사 중 **대기업인 리바트의 상표를 부착**하여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한 사례가 적발*되어 **조달시장 퇴출을 위한 청문절차**가 별도로 진행 중

* 가야중학교의 책상 및 작업용 의자 등 4건 118개 제품에 리바트가구의 네오스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

○ 또한 **세종레미콘이 87억원의 관급물량**을 납품하였으며, 파주레미콘(66억원), 진성레미콘(33억원)의 등도 관급물량을 다량 납품

- 특히 세종레미콘은 동양그룹의 계열사인 (주)동양이 세종레미콘과의 **공장 임대차계약을 통해 우회적으로 조달시장에 납품**하던 중 삼표그룹에게 공장을 매각('13.5.1일자)

< 조달시장 납품 상위업체('12년) >

업 체 명	쏘피체	세종레미콘	파주레미콘	진성레미콘	보명레미콘
납품금액 (백만원)	19,113	8,688	6,581	3,325	2,859

2 레미콘 업종의 위장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

□ **업종별로는** 위장 중소기업의 **83%가 레미콘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구 전산업무 식육가공품 등의 업종에서도 적발

○ **30개 기업이 레미콘 업종**이었으며 **가구 2, 전산업무 2, 식육가공품 1, LED 조명 1개** 순으로 업종 분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별 위반현황>

경쟁제품명	업체수
레미콘	30
가구	2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2
식육가공품	1
경관조명기구 등	1
총계	36



□ 위장 중소기업이 레미콘 업종에 집중된 사유는 **레미콘의 KS기준에서 임차공장 허용**('08.6월, 이전에는 공장 자가보유 한정)이라 판단

○ **대기업 출신 임원 등이 중소기업 설립** 후, 설립된 중소기업을 통해 우회적으로 관수시장에 진출

3 위장 중소기업별 지배관계 대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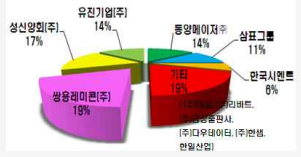
□ 위장 중소기업의 지배 대기업은 **쌍용레미콘이 7개사**(19%)로 다수

○ **성신양회**(5개사), **동양그룹 및 유진기업**(각각 5개사), 삼표그룹(4개사) 순으로 나타남

○ 한편 **동양그룹**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레미콘 사업부 매각의 일환으로 **충청권 9개 공장 등을 삼표그룹에 매각**('13.5)

<위장 중소기업별 소유 대기업 현황>

위장 중소기업별 소유 대기업 현황	관련업체수
쌍용레미콘(주)	7
성신양회(주)	6
유진기업(주)	5
동양메이저㈜	5
삼표그룹	4
한국시멘트	2
기타	7
총계	36



□ 대기업의 위장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배 유형**으로는 대기업의 **공장 등의 임차**, 중소기업의 **지분 확보, 대표 겸임** 등으로 나타남

○ 대기업의 **공장 및 토지, 건물, 시설 등을 등의 임차**가 31건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분 확보** 2건, 대기업 대표가 중소기업 대표를 겸임하면서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경우가 2건임

◇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예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3)

① 지배기업(특수관계자 포함)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②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한 경우

③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 등

<실질적 지배관계 현황>

실질적 지배관계 현황	업체수
토지,건물,시설임차	31
지분보유	2
대표겸임+지분보유	2
대표겸임	1
총계	36



4 위장 중소기업의 지역별 분포현황

□ 위장 중소기업의 지역별 분포현황은 **대전·세종·충남 지역에 12개, 충북 지역 8개, 경기 지역 6개**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세종·대전·충남지역에 집중된 원인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활발한 건설경기**로 인한 레미콘의 **관수물량이 증가**한데 기인

* 해당 지역에 위장중소기업 설립이 증가

붙임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 발췌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부터 「상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에 따른 분할·분할합병 및 물적분할(이하 이 조에서 "분할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대기업(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가 분할일·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 이내에 대기업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유지 또는 공공조달시장의 점유율 확대 등을 목적으로 분할등을 하였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중소기업 2.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조사를 거부한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	제9조의3(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이 호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나 그 대기업의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 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 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라.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관계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다른 주요 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의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은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에 한정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이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경우 상속, 법원의 판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분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정 여부의 결정에 관하여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1]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드는 공장설립비(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말한다),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한 경우 [본조신설 2013.4.3]